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7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 송옥주·안호영·유동수

정춘숙・이광재・박용진

김영주 · 전재수 · 박찬대

임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만 18세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으며(영국의 노동당 15세, 독일 기민당 16세, 사민당 14세),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일부 정당들은 당원 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음.

이에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법률 제 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 | 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
| 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
|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 |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
| 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 <u>이 될 수 없다.</u> |
|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 | |
| <u> </u>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